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046
----------	-------

발의연월일 : 2026. 7. 20.

발 의 자 : 오세희 · 김재원 · 홍기원
이건태 · 민병덕 · 박정현
강준현 · 정준호 · 이수진
한준호 · 김한규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려동물에 대한 소유자등의 보호·관리 의무 및 동물의 유기·학대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반려동물의 양도·양수에 관한 계약 체결 및 적절한 사육·관리에 필요한 사전 교육 이수 등 책임 있는 양육을 위한 관리 기준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충동적인 입양과 무책임한 파양을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반려동물을 유상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 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반려동물을 양수하는 자를 대상으로 해당 동물의 적절한 사육·관리에 관한 사전 교육 이수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사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반려동물의 양도를 제한함으로써 책임 있는 반려동물 양육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01조제3항제5호 및 제5호의2 신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절에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반려동물의 양도·양수에 관한 계약 체결) ① 반려동물을

유상으로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에는 반려동물의 양도·양수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동물의 종류, 품종, 성별 및 출생일(출생일을 알 수 없는 경우에
는 추정 연령을 포함한다)

2. 동물의 건강상태 및 예방접종기록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3(반려동물의 사육 등에 관한 교육) ① 누구든지 반려동물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동물의 적정한 사육·관리에 관하
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반려동물 사육 교육(이하
“사육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사육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최근 3년 이내 사육교육을 이수한 자
2. 수의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 자격을 갖춘 자
3. 그 밖에 사육 경력 및 숙련도가 인정되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교육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반려동물을 양수하려는 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게 반려동물을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1. 동물생산업자·동물수입업자 또는 동물판매업자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반려동물을 분양하거나 기증하는 법인·단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실시·이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01조제3항제5호를 제5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교부하지 아니한 자

5의2. 제1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반려동물의 사육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게 반려동물을 양도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반려동물을 양수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6조의2(반려동물의 양도·양수에 관한 계약 체결) ①</u> <u>반려동물을 유상으로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에는 반려동물의 양도·양수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u> <u>1. 동물의 종류, 품종, 성별 및 출생일(출생일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추정 연령을 포함한다)</u> <u>2. 동물의 건강상태 및 예방접종기록</u> <u>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u> <u>③ 제1항에 따른 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u>
<u><신 설></u>	<u>제16조의3(반려동물의 사육 등에</u>

관한 교육) ① 누구든지 반려 동물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동물의 적정한 사육·관리에 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반려동물 사육 교육(이하 “사육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사육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최근 3년 이내 사육교육을 이수한 자
2. 수의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 자격을 갖춘 자
3. 그 밖에 사육 경력 및 숙련도가 인정되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교육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제101조(과태료) ①·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 (생 략)

<신 설>

<신 설>

해당하는 자는 반려동물을 양수하려는 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게 반려동물을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1. 동물생산업자·동물수입업자 또는 동물판매업자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반려동물을 분양하거나 기증하는 법인·단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실시·이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01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4. (현행과 같음)

5. 제1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교부하지 아니한 자

5의2. 제1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반려동물의 사육 등에 관

<u>5.</u> (생 략) 6. ~ 26. (생 략) ④ · ⑤ (생 략)	<u>한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u> <u>자에게 반려동물을 양도한 자</u> <u>5의3.</u> (현행 제5호와 같음) 6. ~ 26. (현행과 같음) ④ · ⑤ (현행과 같음)
--	--